

박형준 / 5월 / 기출 GS / 7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42754	17.5	10.5	17	10.5	55.5	1	3.45%	5	29
541756	19	10.5	15	8	52.5	2	6.90%	6	
542796	15	10.5	14	11.5	51	3	10.34%	4	
542784	14.5	11.5	16.5	8	50.5	4	13.79%	6	
542771	17.5	12	15	5.5	50	5	17.24%	5	
542870	14.5	12	15	8.5	50	5	17.24%	4	
542777	14.5	11	16.5	7.5	49.5	7	24.14%	5	
542783	18	11	14.5	5.5	49	8	27.59%	6	
542816	15	9	16	9	49	8	27.59%	5	
542914	16	11.5	14	7.5	49	8	27.59%	5	
542098	14.5	11	16	6.5	48	11	37.93%	5	
541771	16	10.5	13.5	7.5	47.5	12	41.38%	4	
542750	14	9	13.5	11	47.5	12	41.38%	4	
542778	15.5	7.5	15.5	9	47.5	12	41.38%	6	
541736	15.5	10	13.5	7.5	46.5	15	51.72%	5	
542922	14.5	10.5	11.5	8.5	45	16	55.17%	6	
541730	15	9.5	12.5	7.5	44.5	17	58.62%	5	
542869	14.5	10	15.5	4.5	44.5	17	58.62%	5	
542917	12.5	9.5	13.5	9	44.5	17	58.62%	6	
541782	14.5	9	15.5	4.5	43.5	20	68.97%	6	
542832	15.5	9	16.5	2.5	43.5	20	68.97%	6	
542805	16.5	10.5	11	5	43	22	75.86%	5	
542866	16.5	8	15	0	39.5	23	79.31%	4	
535255	13	7.5	8.5	10	39	24	82.76%	5	
542806	14.5	10.5	4	4	33	25	86.21%	4	
542873	17	8	5.5	0	30.5	26	89.66%	5	
542015	4.5	6.5	13.5	2.5	27	27	93.10%	5	
542688	13.5	10.5	3	0	27	27	93.10%	5	
542786	14	7	5.5	0	26.5	29	100.00%	5	

<p>박형준/5월/기출GS/7회/1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공동발명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공동발명에 관한 문제로, 甲-乙-丙 나누어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乙 丙에 대해서 결론을 틀리신 경우가 많았습니다.</p> <p>설문 2 : 제37조 1항에 대한 언급 및 묵시적 지분이전 가부, 고려요소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다른 판례를 쓰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p> <p>설문 3 : 민법 적용 가부와 제262조 적용에 대해 써주셔야 합니다. ‘민법을 준용한다’ 정도로만 적어주시기보다는 판례를 정확히 암기해주시길 바랍니다.</p> <p>설문 4 : 답안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효사유에 대한 검토 누락이 많았습니다. 각각 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나누어서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조치 종류를 나열하고 일반론을 기재하는 식으로 작성된 답안들이 많았습니다.</p> <p>3. 소결</p> <p>설문 1-3에서는 판례 암기를 체크해주시고, 설문 4는 답안 구성을 연습하기 좋은 문제이므로 반복 숙달해주시길 바랍니다.</p>	

<p>박형준/5월/기출GS/7회/2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일사부재리와 중복심판금지에 대해서 포섭해주셔야 합니다. 꼭 조문을 언급해주시는 것이 좋고, 판례 암기 정도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있었습니다. 답을 틀리신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p> <p>설문 2 : 익숙하지 않은 논점이며, 쟁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맞추신 경우에는 일단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했습니다.</p> <p>3. 소결</p> <p>설문 1은 전형적인 논점을 다루는 설문이었고, 설문 2는 쟁들 문제였습니다. 설문 1을 완벽하게 쓰시도록 하고, 설문 2에서 너무 시간을 과하게 들이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p>	

박형준/5월/기출GS/7회/3번	채점자
	이정은

1. 전반적인 총평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하에 행위별로 간접침해 및 직접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설문 1 :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은 꼭 언급 필요합니다. 제94조 1항 및 제2조 3호 가목을 함께 언급하신 경우에 답안의 인상이 좋았습니다. 행위별로 나누어서 침해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행위를 어떻게 나누는지 체크해주세요.

설문 2 : 행위별로 나누어서, 행위별로 침해판단에 해당되는 일반론을 기재하고 포섭하는 식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결론을 틀리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재생산 범리는 잉크카트리지 교환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으로, 정확한 주소설정 필요합니다.

설문 3 : 국제적 소진에 대해 언급한 답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직접침해 여부 검토 > 간접침해 여부 검토의 순서로 포섭해주세요. 소모품 관련 판례를 암기해 주시고, 이를 위한 키워드를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3. 소결

“행위” 를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하셔야 하며, 결론을 틀리지 않도록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판례의 이해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답을 틀리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틀리면 감점이 크기에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p>박형준/5월/기출GS/7회/4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손해배상에 관련된 계산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합리적인 실시료 법리로, 설문 3개 중에서 가장 오답이 적었습니다.</p> <p>설문 2 : “복멸” 에 대한 언급이 없는 답안이 많았습니다. 75억 원에 대해서 계산해주시고, “추정 · 복멸되는 경우” 에는 60억 원이라고 포섭하셔야 합니다. “복멸” 판례를 암기해주세요.</p> <p>설문 3 : 제128조 2항에 관한 계산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을 맞추는 것이며, 계산방식을 적어주시고 계산과정을 보여주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p> <p>3. 소결</p> <p>마지막 문제에서 숫자로 정해진 답을 맞춰야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다소 부담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다룰 때는 문제를 푸시고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투자가 필요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반론은 조문만 기재하는 정도로 대폭 줄여야합니다. 불필요한 일반론을 많이 기재하실 필요는 없는 유형의 문제입니다.</p> <p>답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p>	

[문제-1]

I. 원문)



1. 공동발명 관련 규정.

(1) 제 47조 2항.

공동 발명권자, 특허권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2) 제 48조.

특허권 받을 권리를 공유하는 자는 공동으로 출원해야 한다.

2. 공동발명과 요건 취지.

① 각 발명자 요건으로 기술사상적 광범성이 심판권 기여한 차이점이 존재

② 주 발명자 요건으로 그 발명자 이외 발명자의 발명이 심판권적으로

상한 협력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1) 발명 X의 발명자와 발명자. - 근.

근이 발명 X를 개발하기로 한바 발명 X의 발명자는 근이다.

(2) 발명 Y의 발명자 면다. - 근.

면이 발명 Y를 발명 한바 발명 Y의 발명자는 면이다.

(3) 면이 발명 Y를 근이 발명권자들이 기본적 야적이 및 면근은

관련한바 면도 발명자별 개발하리함, 둘도 서로 상한 협력 관계

보수 권리가 공동 발명자가 아니다

(3) 전기 각 발명자 발명기 제도 발명자. - 근. 면 공동발명.

전기 각 발명자 발명기 제도는 발명기 제가 X는 근이 Y는 면. 면이

발명 제기로 협력 권리가. 근. 면이 개발 권리가 "공동 발명자"이다.

4, 5

II.	출원(2).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 제 3항. 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이나 타인에게 이적 가능하다.
2.	출원 후 승계 - 제 3항 4항.
	출원 이후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나,
	출원인 변경신청을 하여야 그 권리가 발생한다.
3.	특허 승계 가능 - 제 3항.
(1)	특허.
	특허를 승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으로 승계를 허용하, 일부 권리의 승계도 허용한다.
(2)	판판방법.
	특허 승계가 가능하다는 양상과 같이 관여 등 재산권은 모두 내려야 판판한다.
4.	승계 가능.
(1)	특허 승계
	특허로부터 특허권으로 승계를 받아 이를 받을 수 있다. 특허변권이 필요하다.
(2)	특허 승계.
	특허 무효 결정소관권, 특허로부터 이적이 허용되는 받은 것을 내려야
	특허 무효에 특허를 받은 권리는 이전할 의사가 필요한 경우
	있어, 무효에 특허를 받은 권리가 특허권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

II 송문(3).

1. 관련 특허법 규정 문제.

공해 특허권이 특허 기본법령에 대한 특허법의 규정이 있다.

2. 공해 특허권의 성질 - 제1제.

합수권 성립은 전부 갖지않 이은 외수권 성립에 비하여, 공해권은 형성하여 특허권은 수권 없음, 공해권은 바 수권, 이때 민방상 공해권이 수권된다.

3. 민방상 공해권 관련 규정 - 민방 제 2항 2항.

공해권 기본은 권능한 것은 수권된다.

4. 사안의 명.

(1) 공해 특허권과

국. 제 2항에 따라 특허권 공해권은 민방 공해 특허권에 해당한다.

(2) 민방 규정 적용.

공해 특허권이 민방 규정 적용되나, 공해와 국. 제 2항 기본은 권능하게 수권된다.

5. 결론.

공해 권능한바 국. 제 2항으로 "1:1"이다

IV.	실용(A).
1.	권리 귀속 주체 특정.
(1)	원상권 귀속 - 제 3자도 1항 본문. 특허를 받은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상권으로 귀속된다.
(2)	출원인 문제 - 제 3항 1항. 출원인 특허를 받은 권리는 이권관유 요건, 제 3항에 따라야 1 이권 관유로 발생한다.
(3)	최종 권리 귀속주체 특정. - J
①	권리 X는 발명권 양상 권이 원상권 귀속주체다.
②	제 1 계약과 제 2 계약에 따라 권리가 무효로 선언 - 권리가 최종 귀속 주체는 권리 관유 귀속주체다.
③	제 3 계약에 따라 결국 J에게 귀속되어야, J이 X의 특허를 받은 권리의 최종 귀속주체다.
2.	권 출원 및 특허의 하위 요건.
(1)	출원인 요건 - 제 33조 1항 본문. 발명자 또는 발명자인 출원인 직격이 인정된다.
(2)	권리 범위 - 무권하다. 권은 권리상 5.28 X 출원 방식에. 이미 특허를 받은 권리를 이권 관유 출원인 직격이 없다. 즉 발명자거나 제 3자거나 출원인만 아니라
(3)	연관.



X의 특허권을 무효화 할수이 하야 되고, 해당 특허는
이전에도 하자는 여전히 간주된다.

3. J의 권리 정도.

(1) 무효판결 예외. 제 133조.

특허권 내기 하거나 받은 내기는 그와 이행을 무효판결을 청구하여
소송하면 소멸할 수 있다.

(2) J의 처분 권리 범위. 제 133조.

1) 등록권이 타인에게 대항 할 수 존재.

취소제에 따르면, 등록된 특허권 받은 권리는 이전 받은 자는 무효가
특허권 이행을 무효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 133조 1항
등록된 대항 권리는 이를 양도하여 수권자에게 양하는 것이거나, 타
대항할 수 있는 것에 대항하지 않는 것이다.

2) 예외

J의 ~~상대권~~ 등록권도 출원권 권리 양행인도 타인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정당한 경우 양아 적절도 인정한다 (제 133조 1항 2호).

(3) 예외

타인에게 제 133조 1항 본문의 권리를 받은 무효판결은 이루어진

4. 타의 권리 정도.

타의 특허권 등록권외의 명 다른 등록권 (제 133조 1항 2호)의
발행권 소멸할 수 있다.



M.S

② 준비 채무불이행이 다른 손해배상 청구와도 있다

[문제 - 2]

I. 설명이다.

9

1. 위의 2과 승판부 인사부채에 관한 여부

(1) 인사부채에 대한 위 - 제 169조

상원의 판결취향방향을 위해 누구의 봉급으로 하급직위 같은 사실은 승판부에 대해 같은 승판은 청구할 수 있다.

(2) 누구의 위 - 제 171조

인사부채에 대한 대위권이 유효하여 누구의 위급으로 인하여 기뢰, 사본 같은 행위 역시 변 문제가 있다.

(3) 등인승판 여부 (소주)

1. 2과 승판 모두 무등승판이, 그 대상도 X 승판임이 등인승판이

(4) 등인선-등인위 여부 (소주)

1과는 권능은 다를지, 2과는 기재문비등 여부와 무관승판은 구분 이상, 무리위선으로 한가 등인선-등인위가 아니다.

(5) 선행 불행성로 걱정 여부 (소주)

1) 판사승 위례

① 종래 위례는 승판은 기점으로 판사했다,

② 최근 판사승 위례는 (1) 종래 위례에 따르면 승판

수령기 위해 기본권 제한된 여부가 최근, 이후 판사승 판결은 무리위례



만일 여자가 유죄로 판결 (㉠) 시 13조 문헌 제44 불합성명 하위
상판 제1회 반문제 되어 이는 해당 제3항에 있다 (㉡) 그 판례
시점 "상판제1회"로 변경했다.

2) 상판제 1회

- ① 2회 상판제1회 시점 2019.1.16 이2 ② 1회 상판제1회 시점의
각주 시점은 2019.1.17 일야 ③ 2회 상판제1회 불합성명
항제1회 있다.

(6) 결론 하위

중심선. 중립제도 아닌, 상판제1회를 기준으로 신개 불합성명 이 항
항제1회도 항-상 2회 상판제1회는 이항제1회 5항제 아니다.

2. 2회 이하 2회 상판 제1회 불합성명 제1항제1회 여부

- (1) 중립제1회 문헌 - 제 15항 조항, 민사소송법 299조 조문.
민사소송법 299조 조문항제 하위 항제1회 중립제1회 신개
상판 제1회 항제1회 있다.
- (2) 항제1회 중립제1회 (33) ✓
1회. 2회 상판제1회 항제1회 조항제1회 중립제1회 항제1회 항제1회 있다.
- (3) 중립제1회 중립제1회 (33) ✓
부원제1회 신개 항제1회 중립제1회 불합성명 있다.
- (4) 신개 상판 제1회 항제1회 ✓

1) 판례시점 (제1회)

- ① 민사소송법 제 299조 조문항제1회 2회 항제1회 중립제1회 항제1회



마지막까지 신청 변경권까지 그 권한을 리얼, 승인의 단계도 승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앞선 의무제 관련 선점제에 대해 승인을 받은 해에 권리는 문제가 있지만, 양 권리 원과 양자 당사자로서 대항성이 의무제 승인을 본거지 요건이다.

2) 사면의 경우.

① 그와 승판관제 승인은 2019.1.17.부터 다룬 것임

② 이의 기간은 신청승인 이어져서 계속됨 아니다.

(9) 보른 - 4주

등기 승판관도 아니니, 승인을 기준으로 승인이 되면 계속도 양방향 적용승판관해 등록 가능이 아니다.

II. 용문(2).

1.5

1. 승판관제 남용의 의미.

권리제 본인이 권리를 무효화하는 위해 시용하는 경우 등기는 승판관제 남용이 된다.

2. 무효승판의 골격 취지.

무효승판은 무효로 된 승판관 무효로 되게 하는 골격 취지 같은 것이다.

3. 사면의 경우.

(1) 1차 승판관제다 되어 존재.

2차 승판관제는 다른 무효승판은 권리를 승인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판권리 인양까지. 중보심판금사를 대외 권리는 무효만 유효한 아님.

(2) 공작권취권

또한 무효행위 공작권취권 성립이 되기 그 심판권도 남용의
가능 있다.

4. 결론.

① 1차심판의 취권 ② 공작권취권은 권리권 ③ 4차
심판 권리는 권리남용이 아님.

10.5

[문제-3]

I. 실문(다).-1)

2.5

1. 구입행위 중재 여부.

(1) 물건발령신청서 - 제 2조 3호 가목.

물건발령신청서란 생산,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2) 사건의 경우

① "구입"은 신청이 아니다.

② 따라서 중재요건 중 "신청" 요건 충족 안됨, 비판례.

2. 사용행위 중재 여부.

(1) ~~가정용~~ 사용행위 중재요건 - 영문용 신청.

중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문용" 신청이 필요하다.

(2) 사건의 경우.

① 영문용 "가정용"으로 개성권 인정 안됨.

② 따라서 "영문용" 신청이 아님, 비판례.

II. 실문(다) (1) -2)

3

1. 영문 구입행위 중재 여부

(1) 간접중재 권리 행사(제) 및 "신청"요건

특정중재 제언성이 있는 부서는 특정중재 제 신청에 대한 행위로 중재로 간주한다, 이때 중립성이 판정되어야 한다.

(2) 사건의 경우

① "구입" 행위는 신청이 아니다.



㉔ 총해당 총 "신사"로써 명세서의 양 강령규례 아니다.

2. 종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총해당.

(1) 제1개정. 및 제1개정/은.

불공정하여 개수. 해당 불공정하여 ~~명세서~~ ~~신사~~ 명세서
생상. 양호는 관 명수 강령규례이다.

(2) 전문등 명. 취(제).

전문등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법명 생상에 사용하, 생상어 "명" 사용의야
한다.

(3) 사용의 개수.

① 양호는 다양한 루트 양호였 프인 터 카호리개 사용한다.

② 다시 전문성기 금명외기 후 특허법명의 전문취 아니다.

③ 다시 강령규례가 아니다 !

Ⅵ. 생문(2)

/ 근로부터 잉크젯 프린터 "구름행시".

특허법상 신사 가 아님이상 무특례권 구름행시 아니다 (제2조 3항가목).

6

2. 인쇄에서 "사용하는 행위"

(*) ~~총해당 총 "명세서" 신사 명세서, 드는 특허권~~

(1) 권리 행 여부

1) 권리소권 명. 취(제).



특허권 등으로 부터 특허발명을 양도받아 이후 실시하는 행위에
특허권의 목적에 반하여 행하여서는 안된다.

2) 사안의 경우. (2주).

정당한 사용행위 아닌 권리남용 구제할 방법, 권리 행위를
위해 반항하지 않거나 이후 실시 대해 행하여서는 안된다.

(2) 결론.

인수내에서 "양도" 실시하는 이상, 권리 행위를 할
특허권 행위가 아니므로, 주권침해

3. 잉크카트리지 구입행위

특수목적 실시가 아닌-상용 용도가 아니다.

4. 잉크카트리지 제제후 사용 행위.

(1) 주권 / 재생산 행위 - 권리행위.

① 부품의 교체 행위가 종래 발명에서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권행위 ②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재생산이다.

(2) 사안의 경우.

1) ~~권리행위~~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주권.

잉크카트리지에 특정한 용의 본질적 부분인바, 이를 제제한 용량
행위이기 종래발명에서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음.

2) 재생산 행위.

따라서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주권행위, 아닌, 재생산행위이다.

(3) 명문.

개"생상"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상무원제 상행으로 명문인
신사에게서 인정되어 확정판결이다.

5. 고지부 4물행위.

권리 행이 필적도 있고, 개생상에 따라 연차 제하의 된
연대가 있는 이상, 고지부 4물행위도 판결이다.

IV. 원문(가)

수.하

1. 권리 행이 필적도 있는 판에 행이 관한 점.

(+) 권은 특화된 잉크젯 프린터를 판매(신사)라고 하는데, 권리
행위 판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있어 확정판결이다.

2. 권리 잉크젯 프린터 수량-판에 행이 확정판결 여부.

(1) 구성요소 행이 판에.

행위에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권리 인정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2) 수량의 경우

잉크젯 프린터의 신사라는 행위는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아니면 확정판결이 아니다

3. 권의 잉크젯 프린터 수량-판에 행이 확정판결 점

(1) 특정권 연구.

특정권이 있는 재산 면적은 크나 특정권 권리상 그
개연성만 있으면 족하다.

(2) 소유권이 존속할 경우 ~~있지 않다~~

소유권이 귀속 재산도 ① 특정권 본질적 부분이 해당한다
② 특정권 근저에 예외가 있음 ③ 수익 귀속 후 ④ 다른
영득이 없는 경우 ⑤ 대 관계이면 소유권 귀속한다

(3) 수익 연구.

1) 영득권의 존속 여부.

① 무의 다른 관계에서 ② 수익 귀속의 요건 ~~충족~~ 사실
영득한다,

③ 무의 특정권 근저에 수익 귀속 요건, 소유권에서 특정권
근저에 예외가, 영득 근저에 귀속이 본질 부분이
대 관계는 나 ④ "소유권"이다.

2) 영득 근저.

영득 근저는 수익 관계는 대 관계 영득 근저
개연 관계, 특정 관계는 특정 관계 대 관계

III

[문제-4]

I. 문제(1).

25

1. 제 1항 5량 이하 - 권리자 수익액

특허발명 실시 다른 권리자 수익액은 법정 최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산정 방법.

$$\text{손해액} = \text{판매액} \times \text{권리자 수익률}$$

$$= (\text{간시수량} \times \text{판매가} \times \text{양도수량}) \times \text{권리자 수익률}$$

3. 결론.

$$\text{손해액} = (800,000 \times 50,000) \times 5\%$$

$$= 200,000$$

II. 문제(2).

3

1. 제 1항 4량 이하 - 침해자 이익액 범위

침해자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로서 추정한다.

2. 산정 방법.

$$\text{손해액} = \text{침해자 이익액}$$

$$= \text{간시수량} \times \text{이익액} \times \text{양도수량}$$

3. 결론.

$$\text{손해액} = 150,000 \times 50,000$$

$$= 7,500,000$$

4. 본문-부연 3단.

$$= 20,000 \times 800,000 \times 5\%$$

$$= 800$$

(3) 결과 - 1년 2배액 + 2년 2배액.

$$\text{최종 산정 금액} = 6000 + 8000$$

$$= 6800$$

10.5%

- 10.5% -

[문제-1]

I. 일문(1)

3.5

1. 공동발명가 판단방법

(1) 발명가 (주제)

법2(1)의 행위를 한 자일므로, 기술적 내용의 향상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자이다.

(2) 공동발명가 요건 (주제)

발명의 양상이 실질적으로 상호협력할 관계이어야 한다

2. 사물의 경우

(1) 甲 공동발명가 여부 (23)

1) 甲은 2과 X 개발계약은 맺었으나, X의 발명의 양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호협력한 사정도 없다.

2) 甲은 2과에 Y 참여하며, 기본적인 2과나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연구과정을 진행하는데 2과발명의 연구 발전하면
이 정도로 발명의 양상에 상호협력한 것이 아니다.

3) 甲은 공동발명가 아니다.

(2) 2과 2과 공동발명가 여부 (23)

1) 2과 2과 각각 발명기 계층의 X와 Y를 발명하며
발명기 계층의 기술적 내용의 향상에 실질적 기여하였다.

2) 2과 2과 각각 교류하지는 않았지만, 甲이 개입기
에해 발명기 계층 개발기 실질적으로 상호협력하였다.

3) 2과 2과 발명기 계층의 공동발명가이다.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법 33(3))



Handwritten signature

3.5

II. 식문 (2)

1.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이권

(1) 조 37① 규정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재산권으로 인정받는다.

(2) 특허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이권계약도 가능하다.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3) 묵시적 이권 (특허)

공동발명에 이권은 받았는데 공동출원한 사람에게, 출원인의 명칭 변경에 기여도, 발명자나 관계, 출원 절차 등은 존재하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묵시적 이권도 인정할 수 있다.

2. 식문의 경우

(1) 甲에게 명시적 이권 여부 (가능)

후원 권에 명시적으로 이권의 행위를 한 사람도 있다.

후원 이후에 乙이 甲과 丙의 계약으로 乙에게 이권받을 수 있다.

(2) 甲에게 묵시적 이권 여부 (가능)

甲이 4 발명 중 3개에 명사, 라벨, 아이디어 내용 등 기타 다양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후원 권리 丙은 공동출원인으로 개개인 것은 甲과 丙 사이에 묵시적 이권이거나 乙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신권 - 甲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9.5

III. 이유 (3)

1. 특허권 권리의 범위 상한

(1) 특허 ① 권리 ② 권리 ③ 권리가 있다.

리 범위 - 권리

① 권리권한에 대해 2011. 12. 29. ④ 타. 일정한, 권리가
한정 한유적으로 나타내며, 특허권은 특허권자의 영유권
의 한 가지로, ② 특허권자가 공적 권리를 부여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허권 - 권리를 한유권 부여
권한도 많은 이상 권리에 대한 민권 권리가 적용된다.

(2) 권리

민권의 권리 권한을 가진 권리에 대해 권리를 민권
2011. 12. 29. ④ 권리 부여 권한에 따라 다르다.

2. 특허권 범위 한정

(1) 민권 범위 (년 202)

특허권 범위 한정 관련 규정 적용한다.

(2) 범위

1) 특허권 범위 한정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한정 관련
적용한다.

2) 권리는 기본 영유권 기득권을 부여하며 다르다.

3. 민권의 경우

민. 202 Y 범용 특허권 권리에 대해 특정한 영유권
관련 권리 (비율 적용한다. (각 50%))



2.5

IV 실용(4)

1. 각종 X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 판정

(1) 발명자 권리

발명자 본인 위하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인 발명자
권리에 발명자에게 ^{원작성은} 귀속된다.

(2)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

개성원본의 권속 일부 양도 가능하며, 양양은 명시적
특약으로 가능하다.

(3) 실용의 경우 - 공동발명자 판정

1) X는 발명자 동시에 발명자인 Z에게 원작성으로
귀속된다.

2) X에 대한 권리는 甲-2인 제1제약과 제2제약은
특하여 허용으로 Z에게 귀속된다.

3) Z가 X에 대한 공동발명자이다.

2. Z 관련 권리

(1) 특허권 양수인 Z에 대한 기법

1) Z는 권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

Z는 Z에 대한 발명권인제 (제380), Z는 이를 Z가 원본으로
받은 상태이다.

2) 대량한 수 있는 "제3제약" 이다 (제381)

① 제3제약에 의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양도인
Z는 Z가 권리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Z가 Z에게 실용특허 받은



특허는 무늬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선 13302)

② 선 380이 재료를 특허받을 수 있는 일체의 용접인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진 것에 한하므로,
무늬새를 특허할 양수한 것은 시행할 수 있는 재료를
해당되지 않는다.

3) 수동적 경우

① 무늬새에 있는 것이 X 특허권을 양수한 것도 X 특허권의
가장도 존재는 인정하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일체의
용접인 양립가능한 재료를 갖지 못한다.

② Z와 X 양립 불가능하다 하여 대항가능하다.

(2) 무늬새의 경우 (선 133)

Z와 양립가능한 무늬새에 대한 특허권이 선 330
위반의 무늬새를 양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3) 특허권 이전등록 처 (선 9902)

Z와 양립가능하다, 선 330이 무늬새에 있는
것 특허권에 대하여 기본이전 등록에 할 수 있다.

(4) 甲 특허권인 경우

1) 무늬새 특허도 등록되면 양립가능 (선 290, 290)이
인하므로 통상 인정될 수 있다.

2) 무늬새 특허권 존재 후 1년 경과 전이면, 타사에
발행 권리 주장 (선 300) 하여 특허 인정될 수 있다.

3) 무늬새 특허권 존재 후 1년 경과 후이면 무늬새

상대방이 아닌 특허청이 신청이 있으므로, 특허 3인칭의
대항력을 따지긴 한다.

(2) 특허청의 판정 (20)

특허청이 특허 허락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특허청이 판정한 특허청의 판정은 항재판이다 ^{甲특허}

(3) 특허 3인칭 (23)

상대방이 아니므로 항재판 아니다.

(4) 특허 대항력 (25)

1) 제 94 조

특허청이 특허청을 "판정" / 판정 판정을 독립한다.

2) 항재판

특허청의 판정을 항재판이 아닌 가정용만 상대
이항 항재판 아니다

2 선원 2

2

(1) 가정용 제 2

1) 타의·처리 (2012)

가정용 제 2인칭이 아닌 가정용 제 2인칭이 제 2인
항재를 가하여 특허청이 부당특허인 안 항재
판정을 항재판 것이다.

2) 특허청의 판정 (2012)

판정의 항재판 항재판 항재판 항재판



4. 잉크카탈리 교체행위 (각주)

(1) 잉크인전 이물 (주제)

1) 특허의 라디칼은 유출의 기재 양의 차이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다.

2) 특허행위를 3배까지 각본에 특허행위를 3회한 특허권은 양도하면, 양도 후에도 3배까지 특허행위를 하는 경우 특허권이 소멸되고, 양도 이후의 경우에는 특허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수리/재생한 번기 (주제)

1) 수리, 개조 등 교체 후 행한 권 행은 특허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4항의 일정한 허용되는 수리된 특허행위 여부가 아니라, 동일성을 깨는 정도의 가공 수리는 상당한 재생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2) 동일성 유지 여부는 특허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한다. 이를 위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식물의 경구-각질층제거 (각주)

1) 잉크카탈리는 甲 특허권의 특허부본의 잉크카탈리 행위를, 乙의 특허권 부분에 해당한다.

2) 甲의 잉크카탈리 교체행위는 잉크카탈리 행위를, 乙의 특허권 행위에 甲의 특허권 여부가 있다.

5. 교체 후 사용행위 (각주)

교체 후에도 甲은 乙의 특허권을 사용한다. 乙는 甲이 교체 후에도 甲의 특허권을 사용한다.

㉔ 3배 권에서 甲 특허권 개량으로 乙의 개량행위는 반
것이 다양하다. 乙이 甲과 특허권 이용 개량행위로
수입금에 대한 2배를 받으면 甲이 3배를 받기 위하여
이익 추구기에는 한계 없이 2배를 받기 위하여
부담한다.

4. 乙의 개량

2의 개량은 甲 특허권을 ~~개량행위~~ 안하면
개량행위 여부는 있다.

1.5

[문제 4]

I. 乙의 (1)

2.5

1. ~~상대 이익액 범위 (2800)~~

특허권과 인종행위 양자 중 乙, 乙의 상행위를 특허권과
상행위를 비교한다. 乙의 인종행위이다.

2. 개량 계약 범위 (2배)

특허권과 개량에 대한 乙의 계약을 맺고 乙의 범위를 받든 바
있다면 乙에게 적용할 것이 2배 범위 범위이다
상행이 양자면 이를 적용하여 2배해야 한다.

3. 乙의 경우

(1) 乙의 2의 총 판매액 (2023년)

80만원/대 x 500대 = 4000만원



(2) 하락익 실현으로 권리
 $400\text{억} \times 5\% = 20\text{억}$

(3) 간결

甲은 20억원을 원배상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회계상 원배로 취급할 수 없다, 권리 권리금권이 있으면
강제에 관여된다.

II 식문(2)

2.5

(1) 상대라 이익액 범위 (28억)

1) 특허권과 인공색소 양자 유하며, 상대라 양자 이익액을
특허권과 원배액으로 수령한다.

2) 원배액의 범위 수령 수령이다.

2 후자의 범위 (취소)

상대라 유한한 이익이나 특허권과 인공색소를
간파하여 후자 일부 수령 가능하다.

3. 인공의 채권

(1) 28억 원 배액
 $5\text{억} \times 15\text{억} = 75\text{억}$

(2) 특허권과 인공색소 범위
 $7\text{억} \times 20\text{억} = 140\text{억}$ 으로 수령 원배액보다 커서
권리금도 된다.

(3) 간결

75억을 수령할 수 있다.



3

II. 실물(3)

1. 특허권과 양도수량을 4만개 범위 (1년 28회) ✓
 특허권 양도수량이 따른 인건수액 (1년)의 실물
 인건수액 수액 (2년)의 특허권 수액만큼 상당하다.

2. 1년 12회 ② 1년 수액액 ✓

(1) 상당액액 ✓

각은 값 [(특허권 수액수량 - 양도수량), (특허권 양도수량 -
 특허권 대외 양도수량 수액)] x 특허권 양도수량
 아양액

(2) 실물

$$= \min((100\text{만개} - 70\text{만개}), (50\text{만개} - 0)) \times 20\text{만원/개}$$

$$= 30\text{만개} \times 20\text{만원} = 60\text{만원}$$

3. 1년 12회 ② 2년 수액액

(1) 상당액액

(특허권 양도수량 - 인건 수액 범위 수액) x 수액액액 x 판매가

(2) 실물

$$(50\text{만개} - 0) \times 80\text{만원} \times 5\% = 400\text{만원} \times \frac{1}{10} = 20\text{만원}$$

4. 실물의 체결

(1) 상당액액

$$60\text{만원} + 20\text{만원} = 80\text{만원}$$

(2) 특허권 대외 양도

특허권 대외 양도로 판매가 범위 내의 양도 (비양도 양도액액)

기여액 범위 양도액액 범위 안하다.

8

